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52
----------	-----

제출년월일 : 1997.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96. 3. 1 시 승격에 따른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지방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보급을 위하여 기존의 어머니 합창단을 개선 발전시키는 『파주시 어머니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합창단의 단장, 임원, 정원등 구성에 관한사항

(안제2조제1항,제2항, 제3항)

나.합창단의 임무 및 위,해촉에 관한사항

(안제3조,제6조,제7조)

다.합창단의 공연연습 및 사례비 등에 관한사항

(안제8조,제9조)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파주시 어머니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합창단은 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합창단의 정원은 단장 및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한다.

③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수 있다.

제3조 (임무) ①단원은 여성으로서 품위와 재능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임원은 원활한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단장을 보좌하며 활동한다.

③문화공보담당관은 합창단의 공연예술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 (단원의 자격) 단원은 파주시 지역내에 거주하며 연령은 만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하며, 성악을 전공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단장) ①단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운영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단장 유고시에는 지휘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촉) ①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실기 및 면접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특별전형에 의해 위촉한다.

③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일자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④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단원의 해촉) 단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파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월3회 이상 또는 년10회 이상 정기연습에 불참하거나 공연참가 특별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단원의 연령이 만 45세를 넘은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제8조 (공연 및 연습) 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공연을 위한 연습을 실시한다.

제9조 (사례비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비와 공연에 필요한 의상구입비 및 연습시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第7條 (市·군의 設置基準등) ①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 <改正 95.8.4>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

2.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

3. 人口 2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2개이상의 地域의 人口가 5萬이상인 郡. 이 경우 郡의 人口가 15萬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군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萬미만인 경우에도 郡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1.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

2. 군이 없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중 1個面

④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그 地域을 管轄하는 道議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市·군의 設置에 의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가.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位置 및 區域의 調整

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운영·管理

다. 傘下 行政機關의 組織管理

라. 傘下 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監督

(후 67)

- 다. 소속公務員의 人事·厚生福祉 및 教育
- 바. 地方稅와 地方稅外收入의 賦課 및 徵收
- 사. 豫算의 編成·執行 및 會計監査와 財産管理
- 아. 行政裝備管理, 行政電算化 및 行政管理改善
- 자. 公有財産管理
- 차. 戶籍 및 住民登錄管理
- 카. 地方自治團體가 필요로 하는 각종 調査 및 統計의 작성
-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 가. 住民福祉에 관한 事業
 - 나. 社會福祉施設의 設置·운영 및 管理
 - 다. 生活困窮者の 보호 및 지원
 - 라. 老人·兒童·心身障礙者·靑少年 및 婦女의 보호와 福祉增進
 - 마. 保健診療機關의 設置·운영
 - 바. 傳染病 및 기타 疾病의 豫防과 防疫
 - 사.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의 운영·管理
 - 아. 公衆接客業所의 衛生改善을 위한 指導
 - 자. 清掃, 汚物의 收去 및 처리
 - 차. 地方公企業의 設置 및 운영
- 3. 農林·商工業等 産業振興에 관한 事務
 - 가. 小溜池·沕 등 農業用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 나. 農林·畜·水産物의 生産 및 流通支援
 - 다. 農業資材의 管理
 - 라. 複合營農의 운영·指導
 - 마. 農外所得事業의 육성·指導
 - 바. 農家副業의 獎勵
 - 사. 公有林管理
 - 아. 小規模畜産開發 및 酪農振興事業
 - 자. 家畜傳染病 豫防
 - 차. 地域産業의 육성·지원
 - 카. 消費者保護 및 貯蓄의 獎勵
 - 타. 中小企業의 육성
 - 파. 地域特化産業의 開發과 육성·지원
 - 하. 優秀土産品 開發과 觀光民藝品 開發
- 4.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管理에 관한 事務
 - 가. 地域開發事業
 - 나. 地方 土木·建設事業의 施行

(후 62)

다. 都市計劃事業의 施行

라. 地方道, 市郡道의 新設·改修 및 유지

마. 住居生活環境改善의 獎勵 및 지원

바. 農村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

사. 自然保護活動

아. 地方河川·準用河川 및 小河川의 管理

자. 上水道·下水道の 設置 및 管理

차. 簡易給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카. 道立·郡立 및 都市公園, 綠地 등 觀光·休養施設의 設置 및 管理

타. 地方軌道事業의 經營

파. 駐車場·交通標識 등 交通便宜施設의 設置 및 管理

하. 災害對策의 수립 및 執行

거. 地域經濟의 육성 및 지원

5. 教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

가. 幼兒園·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의 設置·운영·指導

나. 圖書館·運動場·廣場·體育館·博物館·公演場·美術館·音樂堂 등 公共 教育·體育·文化施設의 設置 및 管理

다. 地方文化財의 지정·보존 및 管理

라. 地方文化·藝術의 振興

마. 地方文化·藝術團體의 육성

6. 地域民防衛 및 消防에 관한 事務

가. 地域 및 職場民防衛組織(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編成과 운영 및 指導·監督

나. 火災豫防 및 消防

第10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 團體의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로 配分하는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第9條第2項第1號의 事務는 各 地方自治團體에 共通된 事務로 한다.

1. 市·道

가. 行政處理結果가 2個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에 미치는 廣域的 事務

(추 67)

第2章 文化・藝術

●文化藝術振興法^[1995. 1. 5] [法律第4883號全文改正]

改正 1995. 12. 6 法律第5014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사업과 活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傳統文化藝術을 계승하고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여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文化藝術”이라 함은 文學, 美術(應用美術을 포함한다), 音樂, 舞蹈, 演劇, 映畫, 演藝, 園樂, 寫眞, 建築, 語文 및 出版을 말한다.
2. “文化產業”이라 함은 文化藝術의 創作物 또는 文化藝術用品을 產業의 수단에 의하여 製作·公演·展示·販賣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文化藝術會館”이라 함은 演奏會·舞蹈·演劇등의 公演과 展示·學術行事 開催등의 用途로 建立된 建築物을 말한다.

第3條 (施策과 勸獎)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을 장려하고, 國民의 文化藝術 活動을 勸獎하여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振興施策은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을 위한 健全生活文化의 開發·普及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文化藝術機關 및 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 文化體育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關聯機關 및 團體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4條 (文化藝術振興委員會) ①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重要施策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所屬하에 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둔다.

②地方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重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所屬하에 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

(후 68)